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4.(금) 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2. 11. 4.(금)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조수정 (044-203-5620)
		담당자	사무관 문경준 (044-203-5622)

미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

-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의 차별성 완화 요청 -
-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제안 -

□ 우리 정부는 미 「인플레이션 감축법(이하 IRA)」 내 **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**(Clean Energy Tax Incentive)**에 대한 정부 의견서**를 11.4일(금) 제출했다.

□ 미 재무부는 **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**(guidance)**을 마련** 중으로, 지난 10.5일부터 한 달 동안 **IRA 내 청정에너지 혜택 관련 6개 분야*에 대한 의견수렴**(public comment)**을 진행**해 왔다.

* ① 친환경차 세액공제(notice 46), ②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(notice 47), ③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(notice 48), ④ 청정발전 세액공제(notice 49), ⑤ 세액공제 현금화(notice 50), ⑥ 임금 수습 요건(notice 51)

○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**자동차·배터리·소재·에너지·철강** 등 관련 **업계 간담회**, **통상 전문가·법조계 자문**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**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**를 마련했다.

*** 관계부처(산업부·기재부·외교부)는 11.2일(수)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 확정**

□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**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**을 미치며, 한·미 자유무역협정, 세계무역기구 등 **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**을 강조했다.

○ 이와 관련,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**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**하거나,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**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**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.

□ **정부 의견서**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친환경차 세액공제 (Notice 46)

<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>

①. 친환경차 최종 조립 요건 : 북미 내에서 친환경차 최종 조립
②-1. 배터리 광물 요건 : 일정 비율(예 : '23년 40%) 이상 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
②-2. 배터리 부품 요건 : 일정 비율(예 : '23년 50%) 이상 북미 내 제조 또는 조립

① 차별성 완화 방안 요구

- (**유예 기간**) **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**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**3년간 유예**하는 방안을 제안

- (**최종 조립 요건**) **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**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'**최종 조립**' **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**하도록 제안

② 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 구체화

- (**광물 요건**) ①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'**자유무역협정 체결국**' **범위를 넓게 해석**, ②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**광물 전체 가치 기준**으로 판단 제안

- (**부품 요건**) ①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**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**으로 판단, ② **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**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**광물 가치를 제외**할 것을 제안

③ 조건 없이 혜택이 제공되는 '상업용 친환경차*' 범위 확대 요청

*** IRA 규정에 따르면,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(최종 조립 요건, 배터리 요건, 우려 외국 법인 등) 없이 최대 7,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부여**

- **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**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 제안

②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/ 첨단제조 세액공제 (Notice 47)

< IRA 상 투자·제조 세액공제 요건 >

①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: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6~30% 세액공제
② 첨단제조 세액공제 : 배터리·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·판매시 세액공제

○ 우리 투자 예정 기업들의 투자·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 확보

- (**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**) ①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, ② **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**(적격 투자)**의 범위를 넓게 인정**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 혜택(적격 투자액 × 세액공제율) 최대화 유도

- (**첨단제조 세액공제**) 배터리 조인트벤처와 완성차 업체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*하여 배터리 생산·판매에 대한 **세액공제 불확실성 제거** 제안

*** 배터리 조인트벤처(완성차업체 - 배터리업체간 합작회사)와 완성차 업체가 '서로 관련되지 않았다(unrelated)'고 해석하여 배터리 생산·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 명확화**

③ 청정발전시설 투자·생산세액공제 (Notice 51)

○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*은 그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 제안

*** 청정발전시설 투자·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 부여**

□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**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***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.

*** (한국) 산업부·기재부·외교부**
(미국) USTR·백악관(NSC·NEC)·재무부·에너지부·상무부·국무부

□ 한편,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11.3일(목) 22시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-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**(John Podesta)*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.

*** 백악관 내 IRA Task Force 의장으로, 재무부·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의 IRA 집행을 총괄**

○ 화상 면담에서 우리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, 향후 미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**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**해줄 것을 요청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조수정 (044-203-5620)
		담당자	사무관 문경준 (044-203-5622)
		담당자	사무관 형건우 (044-203-5628)
	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봉준 (044-215-7670)
		담당자	사무관 박재현 (044-215-7672)
	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	책임자	과 장 김혜연 (02-2100-7684)
		담당자	서기관 전 현 (02-2100-769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